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「위생용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을 말한다. 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화장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법 제2조제1호바목4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.

제3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법 제2조제1호라목”을 각각 “법 제2조제1호바목”으로 한다.

2의2.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”을 “법 제1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8호 중 “폐기명령”을 “회수·폐기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
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법 제28조의2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: 2025년 6월 14일
2. 제13조제14호의2 개정 규정: 2024년 8월 7일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생용품의 종류) 「위생용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라목4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.	제2조(위생용품의 종류) ① 「위생용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을 말한다. 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② 법 제2조제1호바목4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.
제3조(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)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. 1. 2. (생 략)	제3조(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) 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1.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

3. <u>법 제2조제1호라목2)</u> 에 따른 물티슈	3. <u>법 제2조제1호바목</u> ----- --
4. <u>법 제2조제1호라목3)</u> 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	4. <u>법 제2조제1호바목</u> ----- 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압류·폐기 시 제시하는 서 류의 기재사항) <u>법 제16조제3항</u> 에서 “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 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6조(압류·폐기 시 제시하는 서 류의 기재사항) <u>법 제16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한다.	제13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·폐기 또는 <u>폐기명</u> <u>령</u>	8. ----- ----- <u>회수·</u> <u>폐기명령</u>
9. ~ 14. (생 략)	9. ~ 14. (현행과 같음)
14의2. <u><신 설></u>	14의2. <u>법 제28조의2에 따른 증</u> <u>명서의 발급</u>
15 ~ 16. (생 략)	15 ~ 16. (현행과 같음)